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21일, 이해민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11.24.) 상정/축조심사/의
결(수정가결)

제17차 전체회의(2025.11.24.)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해민의원)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는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0년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위성 발사의 급증과 우주 활동의 상시화에 따라,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해졌음. 특히 저궤도 위성의 증가로 충돌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공위성과 지상 인프라 전자장비 고도화로 인해 태양활동 등 우주 환경 변화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소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정요구가 있었고, 본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정책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명현)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2023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시 “우주항공청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주기를 단축할 필요는 없는지 등 적정 주기와 추가 포함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우주개발 진흥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의 시정요구사항(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이 의결된 바 있음.

이러한 상임위 결산심사 결과에 따라 법안을 개정하여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최형두위원)

종전에 수립한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둠.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2024년에 수립된 제2차 우주위험 대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 5년 수립 주기를 적용하도록 함.

수정주요내용

종전에 수립한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둠(안 부칙 제2조 등).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우주위험 대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부칙 <u>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u>

법률 제 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10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우주위험 대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u>10년마다</u>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u>5년마다</u>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